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나희량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ASEAN Protection Trade Measures: Focusing on Non-Tariff Measure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Hee-Ryang Ra^a

^a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05 June 2019, Revised 27 June 2019, Accepted 30 June 2019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s of non-tariff measures (NTM) and specific trade concerns (STC) on the protection trade measures of ASEAN. ASEAN's non-tariff measures and the share of specific trade concerns are very significant as they are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respectively, of the major countries. This means that protection measures using non-tariff measures are a strong feature of ASEAN's trade policy. Also, in the future, ASEAN should tr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caused by exporting countries'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measures. Activating trade policy cooperation is likely to reduce conflicts and costs caused by these trade disputes.

Keywords: ASEAN, Protection trade measures, Non-tariff measures, Special trade concerns, Trade disputes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broad Fund in 2017(C-D-2017-0958).

^a First Author, E-mail: heeryang@pknu.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최근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역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보호무역 조치는 자유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외개방 및 무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아세안(ASEAN)에게도 예외는 아니다(Ra Hee-Ryang, 2016).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관련 정책적 변화는 개별 국가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아세안은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산업간 또는 산업내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의 일부분으로 이미 천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등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통합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미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군에서 서로 보완적,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Ra Hee-Ryang, 2014).

이렇듯 아세안 개별국가 차원의 보호무역조치 및 이에 따른 분쟁은 단순히 그 국가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의 산업 및 경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역내경제의 이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의 비관세조치들 중에서 수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수출을 제약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준, 인증, 수출세, 위생검역 등 관세 이외의 요소가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그 중심적 논거를 보면 아세안의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한다. 아세안에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철강, 전자, 금속 등 민감 산업

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수입제한 등 보호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필리핀은 높은 수준의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무역기술장벽)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관세평가, 통관기준 및 절차 등 통관에 필요한 관세업무 및 행정적 조치들을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교역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Tae-Yoon and Jae-Ho Lee, 2010;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5; Kwon Yul et al., 2006; Kwon Yul and Hee-Yeon Bae, 20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Ministry of Industry and Energy, 2006).

이러한 비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실제적이고 본격적인 노력과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세안은 AFTA 차원에서 관세 이외에도 역내교역에 있어서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수입제한, 쿼터 등과 관련된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추가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무역기술장벽 등의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Tae-Yoon et al., 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Seon A-Leum and Hee-Ryang Ra, 2015).

특히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제가 비관세장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국가품질표준 강제 적용,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 품질인증제도 도입, 태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 규격 부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와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과 HS코드의 자의적인 분류와 같은 통관제도 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비관세장벽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Kim Tae-Yoon and Jae-Ho Lee, 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역내, 역외 국가들 간 최수의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상호 간 정보 교환 및 협력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관련 국가 및 기업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나 국별 인증기관 간 협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Jung Chan-Mo, 2012; Seon A-Leum and Hee-Ryang Ra, 2015).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경우 2015년까지 AEC 형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통하여 통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교역의 자유화와 성장을 위해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폐지라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Tae-Yoon et al., 2010).

선행연구들의 주요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세안은 다양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 등의 전통적 비관세장벽 보다는 오히려 무역기술장벽, 통관 절차 등을 통한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아세안의 경우 비관세장벽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에 비해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토대가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일부로서 동 조치로 인해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관세조치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의미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출보조금처럼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비관세장벽이라기보다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비관세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는 WTO외에 UNCTAD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기

본적으로 각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WTO의 자료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조치는 크게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관세조치의 경우 관세율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경우 WTO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WTO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WTO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특성과 추이를 확인해 갈 수 있다. 우선 아세안은 역내 교역에 있어서는 99% 품목에 대해 이미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역외에 대해서도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MFN 기준 평균 4~5%)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조치를 통한 보호무역조치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효과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며 자유무역을 위한 기본적 토대는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비관세조치는 ① 위생 및 검역 조치(SPS), ② 무역기술장벽(TBT), ③ 반덤핑관세(ADP), ④ 상계관세(CVD), 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⑥ 긴급수입제한조치(SG), ⑦ 수량제한(QR), ⑧ 관세할당(TRQ), ⑨ 수출보조금(XS) 등 총 9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관세조치는 그 자체로 무역분쟁으로 바로 이어지는 않는다. 비관세조치는 상대국의 합의 또는 인정이 부재하고 상대국이 이를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와 더불어 무역분쟁화될 수 있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STC는 비관세조치에 대해 상대국이 WTO의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또는 반대의를 제기한 사안을 의미한다. STC에 대해 당사국은 상대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에게 해당 비관세 조치의 필요성 및 제반 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히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당사국 간의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STC에 대한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한 적절한 또는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이나 타협점에 이르게 된다면 더 이상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국 간 무역분쟁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서 주로 비관세장벽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연구를 넘어 광의의 개념인 비관세조치 및 동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STC에 대한 논의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된 연구 중 비관세조치 및 STC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의 제기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및 STC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은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STC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의 전반적 특성과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다음 2장에서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비관세조치의 현황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3장에서는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추이, 국가별 차이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중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STC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요약, 정리하고 그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의 변화와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1. 주요국과의 비교

본 절에서는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세계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먼저 <Table 1>은 2018년 말 기준 아세안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한중일 등 세계 주요국들의 9가지 비관세조치의 총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

를 활용하여 주요국들의 9가지 비관세조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주요국들의 9가지 비관세조치가 각각의 총 비관세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듯이 아세안은 2005~2018년 SPS 1,290건, TBT 2,275건, ADP 115건, CV 0건, SSG 19건, SG 20건, QR 664건, TRQ 55건, XS 1건 등 총 4,439건의 비관세조치를 발동(initiation) 또는 발효(in force)하였다. 발동은 공식적으로 비관세조치를 시행할 것에 대해 WTO에 통보하는 것이고 발효는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의 발동 후 일정기간 후 실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관세조치의 경우 굳이 발효가 아닌 발동만으로도 교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발동과 발효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한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세계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12.7%(8,98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아세안 다음으로 캐나다 5.7%(4,022건), 중국 4.9%(3,501건), 브라질 4.5%(3,194건), EU 4.4%(3,098건), 일본 4.3%(3,017건), 한국 3.2%(2,272건), 호주 1.9%(1,310건), 인도 1.3%(894건) 등의 순이다. 한·중·일 3국을 합할 경우는 8,790건으로 아세안의 두 배 정도인 12.4%를 차지한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비관세조치는 다분히 국내 산업 보호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비관세조치 자체가 직접적인 국내 산업 보호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비관세조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가 각각의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SPS 5.8%, TBT 5.8%, ADP 5.2%, CV 0%, SSG 1.5%, SG 26.3%, QR 16.4%, TRQ 4.1%, XS 0.2%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세안의 SG(세이프가드) 비중이 인도 5.3%(4건), 미국 2.6%(2건), 캐나다와 중국 1.3%(1건) 등에 비

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SG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 가능성이 클 경우 발동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급속한 시장개방과 무역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SG 발동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되는 SSG의 경우 아세안은 1.5%(19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쌀 등 농업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SG는 오히려 선진국인 미국이 72.6%(896건), 일본 30.0%(370건), EU 13.5%(167건), 한국 12.8%(158건)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진국들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SSG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QR의 경우에도 아세안의 비중이 16.4%(664건)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호주가 11.8%(479건), 일본 10.4%(423건), 중국 및 캐나다가 각각 3.2%(128건), 한국 2.7%(108건), EU 2.6%(105건), 미국 2.6%(104건), 인도 1.9%(76건) 등의 순으로 아세안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QR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로 개도국이 많이 활용해 왔다. WTO 체제에서 엄격하게 그 시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QR을 주요국들에 비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억제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QR을 선호하는 개도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PS, TBT, ADP, TRQ 등의 비관세조치에서도 아세안은 주요국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인다. SPS의 경우 아세안의 비중은 5.8%(1,290건)으로 미국(14.2%), 캐나다(11.6%), 브라질(8.0%), 중국(6.1%)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EU,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 주

요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TBT의 경우 아세안은 5.8%(2,275건)으로 미국(10.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에 이어 중국(4.9%), EU(4.0%), 브라질(3.1%), 한국(3.1%), 캐나다(3.0%), 일본(2.9%) 등의 순이다. ADP의 경우 아세안은 5.2%(115건)으로 미국(19.9%), 인도(15.0%), 브라질(8.8%), EU(6.7%), 중국(5.1%)보다 낮지만 캐나다(4.0%), 호주(3.9%), 한국(1.8%) 일본(0.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TRQ의 경우 아세안은 4.1%(55건)를 차지하는데 이는 EU(6.5%), 한국(5.4%), 미국(4.8%)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비관세조치 중 SG, QR, TBT, TRQ 등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는데 이는 아세안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비관세조치 중 아세안의 비중이 낮은 것은 CV, SSG, XS 등이다. CV는 0건, SSG는 1.5%(19건), XS는 0.2%(1건) 등으로 위의 경우와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CV, SSG, XS 등은 선진국인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CV의 경우 미국 60.2%(147건), 캐나다 12.7%(31건), EU 10.7%(26건), 호주 5.7%(14건)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비관세조치 중 CV, SSG, XS가 적은 것은 그 해석이 가능하다. CV의 경우 상대방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이러한 정보와 피해의 산출 및 인과관계의 규정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CV의 경우는 개도국보다는 주로 선진국이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혜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CV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SSG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시행되는 것인데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아세안의 경우 SSG를 발동할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농업 부문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S는 직접적으로 수출가격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WTO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XS는 총 비관세조치 건수의 0.7%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에도 수출보조금은 WTO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클뿐더러 패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able 1>에서 주요국들 각각의 비관세조치가 해당국의 비관세조치 총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 수 있다. 아세안의 9가지 비관세조치의 비중을 세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SG(0.5%)와 QR(15.0%)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주요국들은 일부 비관세조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PS는 캐나다(64.1%), 브라질(55.2%), 중국(38.4%), 일본(35.2%), 미국(34.9%), EU(32.1%), 인도(32.0%) 등이, ADP는 인도(37.0%), 호주(6.6%), 브라질(6.1%), 미국(4.9%), EU(4.8%), 중국(3.3%) 등이, CV는 미국(1.6%), 캐나다(0.8%), EU(0.8%) 등이, QR의 경우 호주(36.6%), 일본(14.0%), 인도(8.5%) 등이, XS는 EU(0.9%), 호주(0.8%) 등이 세계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BT는 모든 주요국들이 세계평균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때 아세안은 SG나 QR의 사용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어느 특정한 또는 일부의 비관세조치에 편향되거나 또는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주요국들 중 아세안의 경제발전 정도가 세계경제의 평균과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시장개방이 가속화될수록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들처럼 특정 또는 일부의 비관세조치

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세안은 주요국들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관세조치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관세조치 부문에서 적어도 시행건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보호수준(시행건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SPS, TBT, ADP 등의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결코 그 비중이 낮지 않았다. 특히 개도국들이 많이 활용하는 SG, QR 등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TRQ의 경우에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아세안이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아세안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Non-Tariff Measures of ASEAN & Other Countries(2005~2018)

(괄호 안 좌편 숫자는 각 비관세조치 대비 개별국 비중, 우편 숫자는 국가별 비관세조치 총합계 대비 각 비관세조치 비중)

	SPS	TBT	ADP	CV	SSG	SG	QR	TRQ	XS	합계
미국	3,135 (14.2, 34.9)	4,186 (10.7, 46.6)	440 (19.9, 4.9)	147 (60.2, 1.6)	896 (72.6, 10.0)	2 (2.6, 0.0)	104 (2.6, 1.2)	65 (4.8, 0.7)	14 (2.9, 0.2)	8,989 (12.7, 100.0)
EU	995 (4.5, 32.1)	1,541 (4.0, 49.7)	148 (6.7, 4.8)	26 (10.7, 0.8)	167 (13.5, 5.4)	0 (0.0, 0.0)	105 (2.6, 3.4)	88 (6.5, 2.8)	28 (5.7, 0.9)	3,098 (4.4, 100.0)
일본	1,063 (4.8, 35.2)	1,129 (2.9, 37.4)	9 (0.4, 0.3)	0 (0.0, 0.0)	370 (30.0, 12.3)	0 (0.0, 0.0)	423 (10.4, 14.0)	23 (1.7, 0.8)	0 (0.0, 0.0)	3,017 (4.3, 100.0)
캐나다	2,578 (11.6, 64.1)	1,154 (3.0, 28.7)	88 (4.0, 2.2)	31 (12.7, 0.8)	0 (0.0, 0.0)	1 (1.3, 0.0)	128 (3.2, 3.2)	27 (2.0, 0.7)	15 (3.1, 0.4)	4,022 (5.7, 100.0)
호주	487 (2.2, 37.2)	232 (0.6, 17.7)	86 (3.9, 6.6)	14 (5.7, 1.1)	0 (0.0, 0.0)	0 (0.0, 0.0)	479 (11.8, 36.6)	2 (0.1, 0.2)	10 (2.0, 0.8)	1,310 (1.9, 100.0)
한국	688 (3.1, 30.1)	1,212 (3.1, 53.3)	39 (1.8, 1.7)	0 (0.0, 0.0)	158 (12.8, 7.0)	0 (0.0, 0.0)	108 (2.7, 4.8)	72 (5.4, 3.2)	0 (0.0, 0.0)	2,272 (3.2, 100.0)
중국	1,343 (6.1, 38.4)	1,897 (4.9, 54.2)	117 (5.3, 3.3)	5 (2.0, 0.1)	0 (0.0, 0.0)	1 (1.3, 0.0)	128 (3.2, 3.7)	10 (0.7, 0.3)	0 (0.0, 0.0)	3,501 (4.9, 100.0)
인도	286 (1.3, 32.0)	191 (0.5, 21.4)	331 (15.0, 37.0)	3 (1.2, 0.3)	0 (0.0, 0.0)	4 (5.3, 0.4)	76 (1.9, 8.5)	3 (0.2, 0.3)	0 (0.0, 0.0)	894 (1.3, 100.0)
브라질	1,763 (8.0, 55.2)	1,213 (3.1, 38.0)	194 (8.8, 6.1)	3 (1.2, 0.1)	0 (0.0, 0.0)	0 (0.0, 0.0)	0 (0.0, 0.0)	1 (0.1, 0.0)	20 (4.1, 0.6)	3,194 (4.5, 100.0)
한중일	3,089 (14.0, 35.1)	4,238 (10.9, 48.2)	165 (7.5, 1.9)	5 (2.0, 0.1)	528 (42.8, 6.0)	1 (1.3, 0.0)	659 (16.3, 7.5)	105 (7.8, 1.2)	0 (0.0, 0.0)	8,790 (12.4, 100.0)
아세안	1,290 (5.8, 29.1)	2,275 (5.8, 51.3)	115 (5.2, 2.6)	0 (0.0, 0.0)	19 (1.5, 0.4)	20 (26.3, 0.5)	664 (16.4, 15.0)	55 (4.1, 1.2)	1 (0.2, 0.0)	4,439 (6.3, 100.0)
세계	22,141 (100.0, 31.3)	38,942 (100.0, 55.1)	2,211 (100.0, 3.1)	244 (100.0, 0.3)	1,235 (100.0, 1.7)	76 (100.0, 0.1)	4,053 (100.0, 5.7)	1,344 (100.0, 1.9)	491 (100.0, 0.7)	70,737 (100.0,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2. 상품군별 비교

본 절에서는 아세안의 각 상품군 중 각 비관세 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WTO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의거하여 HS코드에 따라 총 21개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Table 2>와 <Table 3>은 각각 세계 및 아세안의 상품군별 비관세조치 현황, 세계 및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중 각 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4>는 세계 및 아세안의 상품군 중 각 비관세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아세안의 상품군별로 시행된 각 비관세조치의 비중을 세계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세계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부 상품군에서 세계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아세안의 경제 및 산업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HS01(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의 경우 세계의 15.1%와 비슷한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HS02(식물성 생산품)의 경우 세계의 14.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7.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동일한 1차산업 상품군 이더라도 식물성 생산품에 비해 동물성 및 광물 관련 생산품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S13(돌·플라스틱·시멘트 등)은 3.4%로 세계의 1.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S15(비금속과 그 제품), HS16(기계·전자기기류 등)의 경우는 각각 6.0%, 9.9%로 세계의 3.0%, 6.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2차산업 상품군 중에서도 광물류 가공품 및 기계·전자기기류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비관세조치 중 각 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SPS의 경우 1차산업 상품 중 H01(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H03(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류 등)에 대한 비중이 각각 44.7% 및 6.0%로 세계의 25.1% 및 3.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차산업의 가공상품인 H04(조제 식품류, 음료·주류·식초·담배류)는 18.3%로 세계의 12.2%에 비해 높다. 2차산업 상품군에서는 대부분 세계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데, 다만 HS06(화학공업 관련 생산품류)는 1.9%로 세계의 5.3%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반대로 HS16(기계

류·전자기기류)의 경우 2.4%로 세계의 1.1%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BT의 경우 1차산업 상품 중 H01(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HS02(식물성 생산품), H03(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류)에 대한 TBT 비중은 각각 3.2%, 3.1%, 1.9%로 비중 자체가 미미하고 세계의 4.4%, 5.9%, 2.1%에 비해 작거나 큰 차이가 없다. 1차산업 가공상품인 H04(조제 식품류, 음료·주류·식초·담배류)의 경우에는 6.1%로 세계의 9.3%에 비해 낮다. 2차산업 상품군에서는 대부분 세계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는데 다만 HS16(기계류·전자기기류)은 16.0%로 세계의 11.8%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DP의 경우는 세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HS02(식물성 생산품), HS07(플라스틱과 고무제품류), HS15(비금속과 그 제품류)의 비중이 각각 3.5%, 12.2%, 71.3%로 아세안 A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세계의 0.9%, 11.7%, 34.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HS15(비금속과 그 제품류)의 경우 세계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CV의 경우 아세안은 그 시행건수가 전무하다. 이에 비해 세계는 HS06(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HS15(비금속과 그 제품류), HS16(기계류·전자기기류) 등이 각각 14.0%, 46.2%, 7.5% 등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이 비관세조치 시행에 있어 CV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실적으로 상대국의 보조금 관련 정보수집 및 인과관계 입증 등 CV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SG은 주로 농업에 특정된 비관세조치로 아세안은 1차산업 H01, HS02, HS04의 비중이 57.9%, 15.8%, 26.3%로 세계의 39.2%, 23.1%, 34.3%와 비교할 때 H01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대신 HS02의 비중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SG은 주로 2차산업 상품에 대해 시행되는 비관세조치이다. 아세안의 경우 HS10(목재와 그 제품류) 및 HS15(비금속과 그 제품류)의 비중이 각각 15.0%, 45.0%로 두 개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동 상품군의 세계의 6.6%, 19.7%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두 상품군에 대한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QR은 특정한 상품군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 상품군 별로 고르게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상품군별 비중도 세계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HS06(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생산품류)로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17.1%와 비슷한 수준이다.

TRQ의 경우에는 주로 HS01, HS02, HS03, HS04 상품군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각 36.4%, 38.2%, 5.5%, 18.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차산업 상품군과 식품 및 기호품류에 대한 TRQ 조치가 많이 시행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의 27.0%, 39.7%, 6.5%, 24.1%와 대동소이한데 그 중 HS01에 대한 비중이 세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XS의 경우 아세안은 단 1건만 시행했기 때문에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세계는 HS01 21.0%, HS02 33.2%, HS03 4.3%, HS04 25.5% 등 주로 1차산업 상품군 및 관련 상품군에 대해 XS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아세안의 각 비관세조치 중 각 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주로 1차산업 상품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HS01, HS02에 대한 비중이 크다. 또한 2차산업 상품군 중에서는 HS04, HS16에 대한 비관세조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산업 상품과 그 가공상품 및 2차산업 중 전기·전자 부속품 생산 관련 산업이 아세안의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Table 4>에서 상품군별로 각각의 비관세조치 비중을 살펴보면 HS01의 경우 아세안은 SPS 80.0%, TBT 10.0%, QR 5.7%, TRQ 2.8%로 SPS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SPS 39.5%, TBT 12.1%, SSG 3.4%, QR 2.1%, TRQ 2.6% 등과 비교해 보면 아세안은 HS01에 대한 비관세조치 중 SPS에 보다 더 많이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이 HS01에 대해 TBT보다 SPS에 많이 의존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세안의 HS01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HS02의 경우 아세안은 SPS 57.8%, TBT 21.6%, QR 11.9%, TRQ 6.4% 등으로 SPS와

TBT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SPS 36.9%, TBT 17.1%, QR 1.6%, TRQ 3.9%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HS02의 경우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를 통한 보호 성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HS03의 경우에도 아세안은 SPS 57.9%, TBT 32.3%, QR 7.5%, TRQ 2.3% 등으로 SPS와 TBT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SPS 28.9%, TBT 32.7%, QR 4.0%, TRQ 3.6% 등과 비교해 보면 아세안은 HS03에 대한 비관세조치 중 TBT보다는 SPS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S04의 경우 아세안은 SPS 55.7%, TBT 32.3%, QR 8.3%, TRQ 2.4% 등으로 역시 SPS와 TBT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SPS 26.7%, TBT 35.8%, QR 1.7%, TRQ 3.2% 등과 비교해 보면 아세안은 HS03에 대한 비관세조치 중 SPS, QR 등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HS05~HS21까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세계에 비해 SPS, TBT의 비중은 낮거나 비슷한 반면 QR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HS05의 경우 아세안은 SPS 1.9%, TBT 59.8%, QR 38.3%로 세계의 3.9%, 76.2%, 14.1%와 비교해 보면 SPS와 TBT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반면 QR의 경우는 2.5배 이상 높다. 또한 HS11의 경우 SPS 6.5%, TBT 21.7%, QR 54.3%로 세계의 10.7%, 47.1%, 13.7%와 비교했을 때 역시 SPS와 TBT의 경우는 낮은 반면 QR의 경우는 1.5배 이상 높다. 이렇게 아세안은 주로 2차산업의 경우 SPS, TBT 등의 활용보다는 QR의 활용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아세안이 국내 2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복잡한 사전 조사와 절차가 필요한 SPS, TBT 보다는 단순하고 시행하기 용이한 QR을 더 많이 의지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아세안은 세계와 비교했을 때 1차산업 상품군에 대해서는 주로 TBT보다는 SPS와 QR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2차산업 상품군에 대해서는 주로 QR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QR의 경우 WTO체제에서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TBT의 활용을 늘리는 대신 QR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Non-Tariff Measures of the World & ASEAN by ISIC

(각 비관세조치 관련 숫자 중 좌편 숫자는 세계, 우편 숫자는 아세안)

HS	상품분류	SPS	TBT	ADP	CV	SSG	SG	QR	TRQ	XS
00	HS코드 상품 외	5,827	10,978	599	7	0	45	7	0	60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5,552	1,698	72	1	0	494	0	300	103
02	식물성 생산품	4,985	190	2,316	71	21	4	3	0	285
03	동물성·식물성 자원과 기술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품 자원과 동물성·식물성 비(備)	712	77	805	43	6	0	3	0	19
04	조제 식품품, 음료·주류·식료,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품	2,694	236	3,614	138	53	0	10	0	423
05	광물성 생산품	60	2	1,161	64	24	0	4	0	0
06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1,163	25	3,151	134	417	5	34	0	11
0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229	5	1,914	128	258	14	20	0	0
0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60	7	121	0	1	0	0	0	0
0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진·엑스파르티(esparto), 그 밖의 조류 재료의 제품, 비구니 세공품(basketware)과 지조세공품(絛織工物)	205	5	346	32	0	5	0	0	0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최후한 종이,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30	1	256	19	74	0	10	0	0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외의 제품	102	3	451	10	129	7	8	0	12
12	신발류·모자류·신발(총稱)·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11	1	220	15	4	0	0	0	0
13	플라스틱(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외 유리제품	26	1	1,164	125	109	2	6	0	0
14	천연견주, 양식견주, 귀석·반귀석, 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발양식용품, 주화	14	0	43	4	0	0	0	0	0
15	바탕속과 그 제품	70	0	1,625	154	769	82	108	0	0
16	기계류·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농용기·농성편생기, 트랙터의 엔진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245	31	4,597	365	138	0	16	0	0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66	0	1,482	105	38	0	6	0	0
18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축광기·광사기·영상기기·의복용 기기·시계, 양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6	2	1,369	86	27	0	0	0	0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6	0	52	1	0	0	0	0	0
20	잡품	19	2	1,545	108	41	0	3	0	0
21	예술품·수집품·공예품	9	0	34	2	0	0	0	0	0
합계		22,141	1,290	38,942	2,275	2,211	115	244	0	1,235
									19	76
									20	4,063
									664	1344
									55	491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Table 3. Proportion of Non-Tariff Measures of the World & ASEAN by ISIC(relative to each NTM, %)

(각 비관세조치 관련 숫자 중 좌편 숫자는 세계, 우편 숫자는 아세안)

HS 상품분류	SPS	TBT	ADP	CV	SSG	SG	QR	TRQ	XS	합계											
00 HS코드 상품 외	26.3	28.2	26.3	2.5	0.9	2.9	0.0	0.1	0.0	58.2	35.0	0.0	0.0	0.2	0.0	12.2	0.0	24.6	16.5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25.1	44.7	4.4	3.2	0.7	0.0	0.4	0.0	39.2	57.9	0.0	0.0	7.4	6.2	27.0	36.4	21.0	0.0	15.1	16.2	
02 식물성 생산품	22.5	14.7	5.9	3.1	0.9	3.5	1.2	0.0	23.1	15.8	1.3	0.0	5.5	5.9	39.7	38.2	100.0	33.2	100.0	14.6	7.4
03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 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3.2	6.0	2.1	1.9	0.3	0.0	1.2	0.0	1.5	0.0	0.0	0.0	2.4	1.5	6.5	5.5	4.3	0.0	2.7	3.0	
04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12.2	18.3	9.3	6.1	2.4	0.0	4.1	0.0	34.3	26.3	0.0	0.0	4.2	5.3	24.1	18.2	25.5	0.0	10.9	9.6	
05 광물성 생산품	0.3	0.2	3.0	2.8	1.1	0.0	1.6	0.0	0.0	0.0	0.0	0.0	5.3	6.2	0.0	0.0	0.0	0.0	0.0	1.6	2.4
06 화학공업이나 연금업의 생산품	5.3	1.9	8.1	5.9	18.9	4.3	13.9	0.0	0.9	0.0	2.6	5.0	17.1	16.1	1.4	0.0	2.2	0.0	7.2	6.1	
0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1.0	0.4	4.9	5.6	11.7	12.2	8.2	0.0	0.0	0.0	2.6	0.0	3.7	4.1	0.0	0.0	0.0	0.0	3.0	3.9	
08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0.3	0.5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2	2.3	0.0	0.0	0.0	0.0	0.4	0.5	
0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條細工物)	0.4	0.9	1.4	1.4	0.0	2.0	0.0	0.0	0.0	2.6	0.0	3.3	2.7	0.0	0.0	0.0	0.0	0.0	1.0	1.2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편지(레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0.1	0.1	0.7	0.8	3.3	0.0	4.1	0.0	0.0	6.6	15.0	2.9	2.7	0.0	0.0	0.0	0.0	0.0	0.6	0.9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0.5	0.2	1.2	0.4	5.8	6.1	3.3	0.0	1.0	0.0	0.0	3.2	3.8	1.0	1.8	1.6	0.0	1.0	1.0	1.0	
12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0.0	0.1	0.6	0.7	0.2	0.0	0.0	0.0	0.0	0.0	0.0	2.1	2.3	0.0	0.0	0.0	0.0	0.0	0.4	0.7	
13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제품	0.1	3.0	5.5	4.9	1.7	2.5	0.0	0.0	3.9	0.0	3.9	0.0	2.6	3.5	0.0	0.0	0.0	0.0	1.6	3.4	
14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구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용품, 주화	0.1	0.0	0.1	0.2	0.0	0.0	0.0	0.0	0.0	0.0	0.0	3.5	3.9	0.0	0.0	0.0	0.0	0.0	0.2	0.7	
15 비금속과 그 제품	0.3	0.0	4.2	6.8	34.8	71.3	44.3	0.0	0.0	19.7	45.0	3.7	3.2	0.0	0.0	0.0	0.0	0.0	3.0	6.0	
16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영상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1	2.4	11.8	16.0	6.2	0.0	6.6	0.0	0.0	0.0	7.8	6.3	0.0	0.0	0.0	0.0	0.0	0.0	6.0	9.9	
17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0.3	0.0	3.8	4.6	1.7	0.0	2.5	0.0	0.0	1.3	0.0	4.5	6.5	0.0	0.0	0.0	0.0	0.0	2.0	3.3	
18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경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1	0.2	3.5	3.8	1.2	0.0	0.0	0.0	0.0	0.0	0.0	4.9	3.8	0.0	0.0	0.0	0.0	0.0	1.8	2.5	
19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4.1	5.7	0.0	0.0	0.0	0.0	0.0	0.3	0.9	
20 집품	0.1	0.2	4.0	4.7	1.9	0.0	1.2	0.0	0.0	0.0	0.0	5.7	5.9	0.0	0.0	0.0	0.0	0.0	2.0	3.4	
21 예술품·수진품·공예품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2.7	2.4	0.0	0.0	0.0	0.0	0.0	0.2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Table 4. Proportion of Non-Tariff Measures of the World & ASEAN by ISIC(relative to each product, %)

(각 비관세조치 관련 숫자 중 좌편 숫자는 세계, 우편 숫자는 아세안)

HS 상품분류	SPS	TBT	ADP	CV	SSG	SG	QR	TRQ	XS
00 HS코드 상품 외	25.6	48.1	81.7	0.2	0.1	0.0	0.0	0.0	0.0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물	39.5	80.0	12.1	10.0	0.1	0.0	3.4	1.5	0.0
02 식물성 생산물	36.9	57.8	17.1	21.6	0.2	1.2	0.0	2.1	0.0
03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28.9	57.9	32.7	32.3	0.2	0.0	0.1	0.0	0.0
04 조제 시료품, 음료 · 주류 · 식초, 담배 · 제조한 담배 대용품	26.7	35.8	32.5	0.5	0.0	0.1	0.0	4.2	1.2
05 광물성 생산물	3.9	1.9	76.2	59.8	1.6	0.0	0.3	0.0	0.0
06 화학공업이나 연금공업의 생산물	17.4	9.2	47.3	49.3	6.3	1.8	0.5	0.0	0.0
07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8.2	2.9	68.3	73.6	9.2	8.0	0.7	0.0	0.0
08 원파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16.1	31.8	32.4	0.0	0.3	0.0	0.0	0.0	0.0
09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찰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품(basketware)과 지조제품(絨絨工物)	22.1	9.1	37.3	58.2	3.5	0.0	0.5	0.0	0.0
10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편지(워시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 판지와 이들의 제품	5.7	2.4	48.9	46.3	14.1	0.0	1.9	0.0	0.0
11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0.7	6.5	47.1	21.7	13.5	15.2	0.8	0.0	0.0
12 신발류 · 모자류 · 신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솜마당 ·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시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3.3	3.2	66.3	48.4	1.2	0.0	0.0	0.0	0.0
13 돌 · 플라스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유리제품	1.8	0.7	80.8	82.8	7.6	1.3	0.4	0.0	0.0
14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구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6.6	0.0	20.3	13.3	0.0	0.0	0.0	0.0	0.0
15 비금속과 그 제품	2.5	0.0	57.9	57.9	27.4	30.8	3.8	0.0	0.0
16 기계류 · 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4.4	7.1	82.7	83.3	2.5	0.0	0.3	0.0	0.0
17 차량 · 항공기 ·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3.6	0.0	80.5	70.9	2.1	0.0	0.3	0.0	0.0
18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6	1.8	83.1	76.1	1.6	0.0	0.0	0.0	0.0
19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2.4	0.0	17.9	2.6	0.0	0.0	0.0	0.0	0.0
20 장품	1.0	1.3	83.1	72.5	2.2	0.0	0.2	0.0	0.0
21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5.5	0.0	20.9	11.1	0.0	0.0	0.0	0.0	0.0
합계	23.8	29.1	41.9	51.3	2.4	2.6	0.3	0.0	1.3
									0.4
									0.1
									0.5
									4.4
									15.0
									1.4
									1.2
									0.5
									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3.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비관세조치

본 절에서는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Table 5>는 2018년 말 기준 아세안 국가별 비관세조치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과 <Table 7>은 이를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의 8가지 비관세조치(아세안의 경우 CV는 한 건도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가 각각의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개별국가가 시행한 비관세조치 총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Table 5>에서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보면 우선 비관세조치 건수에서는 태국이 1,731건(39.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893건(20.6%), 싱가포르 491건(11.3%), 말레이시아 470건(10.8%), 인도네시아 331건(7.6%), 베트남 340건(7.8%) 등의 순이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비관세조치 건수가 각각 6건(0.1%), 49(1.1%), 22건(0.5%), 미얀마 2건(0.0%)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선발국인 아세안5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LMV의 경우 베트남을 제외하면 그 건수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아세안5 중에서도 태국과 필리핀 두 국가의 비관세조치 건수의 합이 2,624건(60.5%)으로 아세안 총 건수의 2/3에 이르는 등 국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에서 각 비관세조치에서 아세안 각 국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SPS의 경우 필리핀이 40.9%(52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태국 29.9%(386건), 인도네시아 10.7%(138건), 베트남 8.7%(112건), 싱가포르 5.0%(65건), 말레이시아 4.3%(55건) 등의 순이다. SPS의 경우 태국보다는 오히려 필리핀이 더 많이 시행하고 있고 후발국인 베트남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는 태국이 47.0%(1,020건), 말레이시아 17.5%(381건), 필리핀 11.6%(252건), 베트남 9.9%(215건), 인도네시아 6.7%(138건), 싱가포르 4.8%(104건) 등의 순이다. TBT의 경우 태국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

지하고 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DP의 경우 태국이 42.6%(49건), 인도네시아 33.9%(39건), 말레이시아 15.7%(18건), 베트남 6.1%(7건), 필리핀 1.7%(2건) 등의 순이다. ADP의 경우 SPS와 TBT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가 태국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해 AD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SG는 위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인도네시아가 31.6%(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시행하고 있고 이어서 필리핀과 베트남이 21.1%(4건),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각각 15.8%(3건) 등의 순이다. SG의 경우 SPS와 TBT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시행이 까다로운 SG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에 적절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보다는 SG를 우선할 수밖에 통상정책의 후진성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SSG의 경우 필리핀만이 19건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은 쌀을 비롯한 농업부문의 비교우위를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농업 보호를 위해 SSG를 다수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QR의 경우 싱가포르가 48.5%(3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태국 37.5%(249건), 필리핀 11.3%(75건), 라오스 2.7%(18건) 등의 순이다. QR은 WTO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관세조치이지만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QR 건수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도시) 개방경제인 싱가포르의 경우 필요할 경우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개발국인 라오스는 CLMV 중 유일하게 QR을 다수 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RQ의 경우 태국이 43.6%(24건), 필리핀 25.5%(14건), 말레이시아 23.6%(13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3.6%(2건) 등의 순을 기록하였다. XS의 경우 인도네시아만이 1건을 기록하였다.

Table 5. Non-Tariff Measures of ASEAN Countries(2005~2018)

	SPS	TBT	ADP	SSG	SG	QR	TRQ	XS	합계
브루나이	4	2							6
캄보디아		49							49
인도네시아	138	145	39		6		2	1	331
라오스	3	1				18			22
말레이시아	55	381	18		3		13		470
미얀마		2							2
필리핀	527	252	2	19	4	75	14		893
싱가포르	65	104				322			491
태국	386	1,020	49		3	249	24		1,731
베트남	112	215	7		4		2		340
아세안6	1,175	1,904	108	19	16	646	53	1	3,922
CLMV	115	267	7	0	4	18	2	0	413
합계	1,290	2,171	115	19	20	664	55	1	4,335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Table 6. Proportion of Non-Tariff Measures of ASEAN Countries(relative to each NTM, %)

	SPS	TBT	ADP	SSG	SG	QR	TRQ	XS	합계
브루나이	0.3	0.1	0.0	0.0	0.0	0.0	0.0	0.0	0.1
캄보디아	0.0	2.3	0.0	0.0	0.0	0.0	0.0	0.0	1.1
인도네시아	10.7	6.7	33.9	0.0	31.6	0.0	3.6	100.0	7.6
라오스	0.2	0.0	0.0	0.0	0.0	2.7	0.0	0.0	0.5
말레이시아	4.3	17.5	15.7	0.0	15.8	0.0	23.6	0.0	10.8
미얀마	0.0	0.1	0.0	0.0	0.0	0.0	0.0	0.0	0.0
필리핀	40.9	11.6	1.7	100.0	21.1	11.3	25.5	0.0	20.6
싱가포르	5.0	4.8	0.0	0.0	0.0	48.5	0.0	0.0	11.3
태국	29.9	47.0	42.6	0.0	15.8	37.5	43.6	0.0	39.9
베트남	8.7	9.9	6.1	0.0	21.1	0.0	3.6	0.0	7.8
아세안6	91.1	87.7	93.9	100.0	80.0	97.3	96.4	100.0	90.5
CLMV	8.9	12.3	6.1	0.0	20.0	2.7	3.6	0.0	9.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다음으로 <Table 7>에서 아세안 개별국가들이 어떤 비관세조치를 많이 활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비관세조치 중 SPS 29.8%, TBT 50.1%로 두 가지 비관세조치를 가장 많이 시행하였고 다음으로는 QR 15.3%, ADP 2.7%, TRQ 1.3% 등의 순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비관세조치 시행은 세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QR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 건수가 미미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는 SPS(41.7%), TBT(43.8%)를 주로 활용하는 동시에

ADP(11.8%)도 상대적으로 다수 활용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주로 TBT(81.1%)를, 필리핀은 SPS(59.0%)와 TBT(28.2%)를, 싱가포르를 SPS(13.2%), TBT(21.2%)와 함께 QR(65.6%)를, 태국은 TBT(58.9%), SPS(22.3%)를, 베트남은 SPS(63.2%)와 TBT(32.9%)를 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아세안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5가 주로 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고 CLMV 중에서는 베트남이 비관세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수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

Table 7. Proportion of Non-Tariff Measures of ASEAN Countries(relative to the total number of NTM, %)

	SPS	TBT	ADP	SSG	SG	QR	TRQ	XS	합계
브루나이	66.7	33.3	0.0	0.0	0.0	0.0	0.0	0.0	100.0
캄보디아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인도네시아	41.7	43.8	11.8	0.0	0.0	0.0	0.6	0.3	100.0
라오스	13.6	4.5	0.0	0.0	0.0	81.8	0.0	0.0	100.0
말레이시아	11.7	81.1	3.8	0.0	0.0	0.0	2.8	0.0	100.0
미얀마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필리핀	59.0	28.2	0.2	2.1	2.1	8.4	1.6	0.0	100.0
싱가포르	13.2	21.2	0.0	0.0	0.0	65.6	0.0	0.0	100.0
태국	22.3	58.9	2.8	0.0	0.0	14.4	1.4	0.0	100.0
베트남	32.9	63.2	2.1	0.0	0.0	0.0	0.6	0.0	100.0
아세안6	30.0	48.5	2.8	0.5	0.5	16.5	1.4	0.0	100.0
CLMV	27.8	64.6	1.7	0.0	0.0	4.4	0.5	0.0	100.0
합계	29.8	50.1	2.7	0.4	0.4	15.3	1.3	0.0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장개방과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시행해 온 아세안5와 베트남이 비관세조치 또한 다수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태국과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추이

1. 주요국과의 비교

다음으로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절에서는 세계 및 미국, EU, 한중일 등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아세안 비관세조치 추이의 변화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Fig. 1>~<Fig. 12>는 2005~2018년 아세안을 포함한 세계 및 주요국들의 비관세조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보듯이 세계의 비관세조치는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2,463건이었던 비관세조치는 2018년 3,773건으로 53.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특히 SPS와 TBT 증가가 두드러진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PS는 2005년 659건에서 2018년 1,319건으로 50.0% 증가하였다. 특히 TBT의 경우 2005년 775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2,137건을 기록하였다. ADP는 2005년 316건, 2018년 25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CV의 경우에도 건수 자체는 적지만 2005년 8건에서 2018년 49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SG의 경우 2005년 13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SSG와 QR은 각각 2005년 154건, 538건에서 2015년 3건, 2017년 1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세계의 비관세조치의 증가세는 주로 TBT, SPS, ADP, CV 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도 TBT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TBT와 SPS의 경우 직접적인 무역의 제한조치라기 보다는 기술요건, 표준, 위생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로서 WTO체제에서도 그 조치의 시행이 용이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관세조치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DP와 CV의 경우에도 상대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인정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시

행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반해 SG, SSG, QR 등의 경우 WTO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들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 수출국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주요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경우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Fig. 2>~<Fig. 7>은 2005~2018년 위 선진국들의 비관세조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비관세조치 총 건수로는 2016년 이후 대부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8년 다시 감소 내지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그 2016~2017년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미국, EU, 및 한국의 경우는 TBT의 증가가, 일본과 캐나다는 SPS의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미국은 2005년 71건에서 2018년 112건으로, EU는 22건에서 2018년 108건으로, 한국은 19건에서 65건으로 급증하였다. SPS의 경우 일본은 2005년 22건에서 2018년 47건으로, 캐나다는 18건에서 81건으로 급증하였다. ADP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가 눈에 띄는데 미국은 2005년 8건에서 2018년 46건으로, 캐나다는 1건에서 7건으로, 호주는 5건에서 16건으로 증가하였다. 선진국들 중에서 EU와 한국의 경우에는 TBT의 증가가 두드러진데 비해 일본과 캐나다는 SPS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TBT의 증가도 뚜렷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최근에는 ADP도 급증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TBT와 SPS의 증가세가 2015년 이후 다시 두드러지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선진국들에서의 비관세조치 증가는 2011년 EU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와 확산이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주요국들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구적 조치

차원에서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Fig. 8>~<Fig. 12>는 2005~2018년 중국,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 주요 개도국들의 비관세조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아세안 등 주요 개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진국들과 같이 비관세조치 건수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5년 147건에서 2015년 365건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4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는 40건에서 2017년 157건, 2018년 93건으로, 브라질은 2005년 78건에서 2018년 246건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 TBT가 2005년 106건, 2008년 179건, 2009년 200건으로 초기에는 다수 시행하였으나 2010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TBT 건수가 2005년 2건에서 2018년 14건으로 증가하였고 브라질은 2005년 34건에서 2018년 85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위 3개 주요 개도국은 최근 들어 비관세조치의 활용에 있어서 TBT보다는 SPS(중국과 브라질)와 ADP(인도)를 많이 시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018년 SPS건수가 55건으로, 인도는 2016년 ADP가 51건으로, 브라질은 2018년 SPS가 147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그 추이를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최근의 이러한 급증세는 위에서 언급한 세계경제위기의 지속과 경기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진영의 보호무역정책의 강화라는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Fig. 1. Trends of NTM(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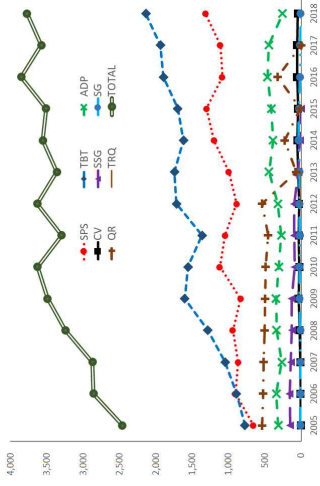


Fig. 2. Trends of NT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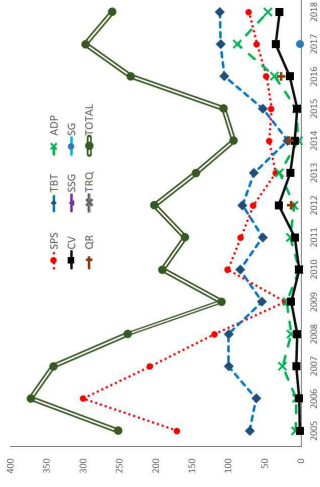


Fig. 3. Trends of NTM(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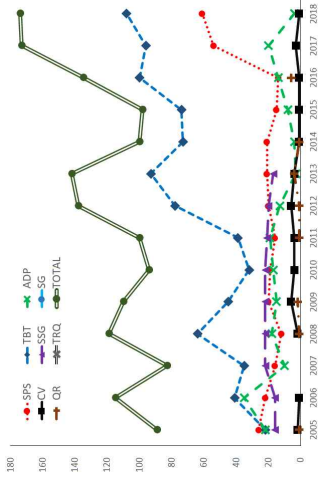


Fig. 4. Trends of NTM(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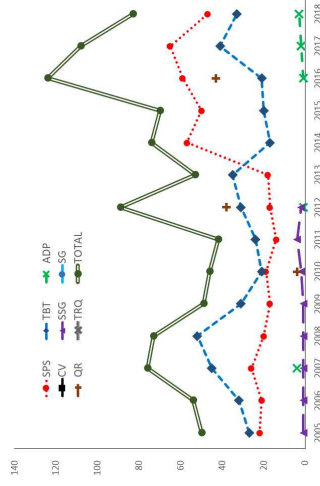


Fig. 5. Trends of NTM(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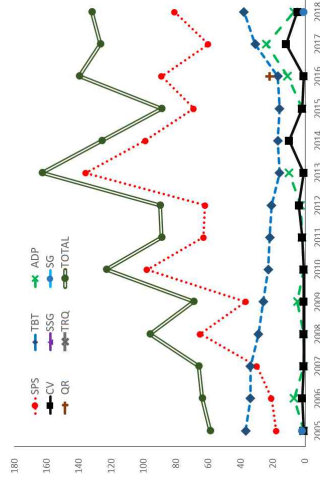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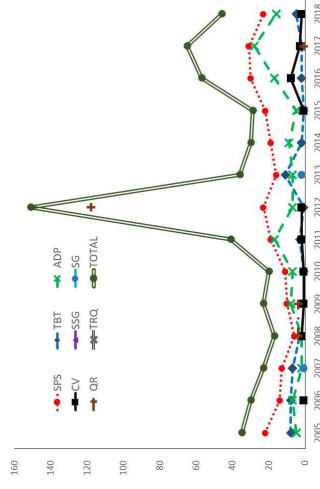


Fig. 6. Trends of NTM(Australia)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Fig. 7. Trends of NTM(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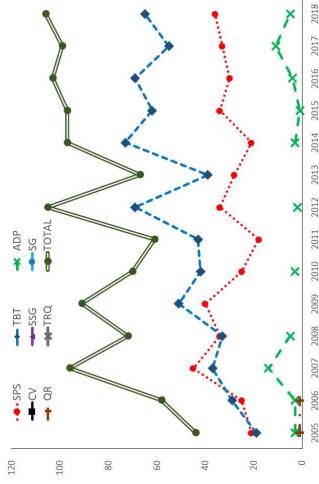


Fig. 8. Trends of NTM(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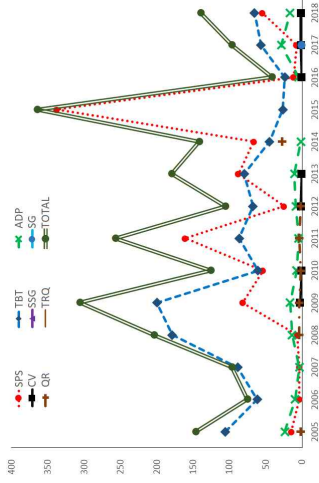


Fig. 9. Trends of NTM(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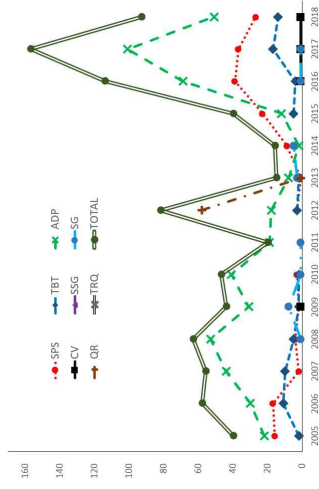


Fig. 10. Trends of NTM(Braz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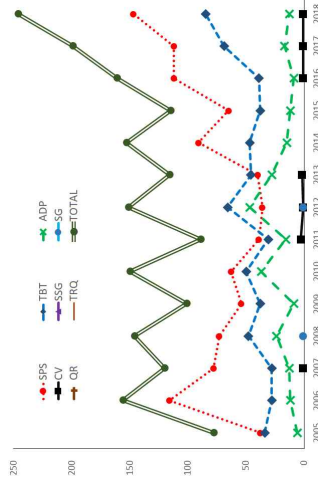


Fig. 11. Trends of NTM(China, Japan and 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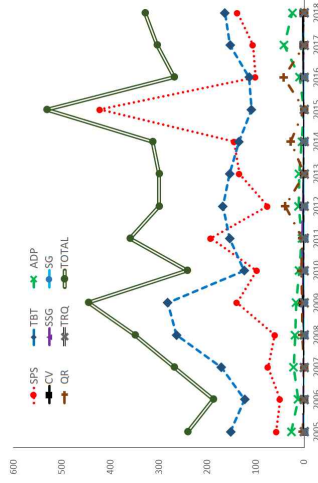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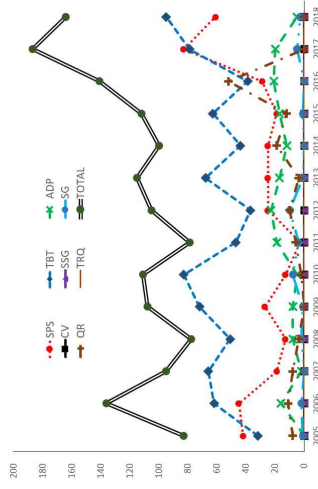


Fig. 12. Trends of NTM(ASEAN)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2.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의 추이 비교

아세안 전체 및 아세안 개별국의 경우는 <Fig. 12>~<Fig. 1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비관세조치의 추이와 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비관세조치 건수를 보면 2005년 83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EU 재정위기 이후 2014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이후의 급증세와 2018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은 아세안이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 다른 주요국들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관세조치 중 TBT는 그 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83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7년 79건, 2018년 95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반면 SPS는 2005년 42건에서 2011년 단 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6년 29건, 2017년 83건, 2018년 61건으로 급증하는 등 TBT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DP의 경우에도 2010년 5건에서 2016년 21건, 2017년 2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QR의 경우 2005년 8건에서 2009년 0건, 2010년 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52건까지 급증하였으나 2017년, 2018년 모두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QR에 대한 WTO 차원의 제한 및 금지원칙이 아세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SPS와 TBT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추이는 세계적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도국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또한 주요 3개 개도국과는 다른 상이점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인도네시아(<Fig. 13>)는 비관세조치가 2005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35건으로 급증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16년 18건, 2017년 20건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6건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관세조치 중 TBT 비중(39.3%)이 가장 높지만 SPS(20.5%)에 비해 ADP(30.1%)의 활용도가 두 번째 비중으로 높다. 하지만 그 빈

도수는 2013년 11건 이후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SG의 시행건수가 총 24건(10.0%)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네시아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강하게 비관세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DP와 SG 모두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이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무역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Fig. 14>)의 경우 2005년 2건에 불과했던 비관세조치가 2014년 2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8년 16건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비해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건수도 적고 QR, TRQ 등의 수량제한적 비관세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TB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ADP도 2012년 11건, 2015년 9건, 2018년 4건 등 다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PS의 경우 2014년 6건, 2015년 3건, 2018년 3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Fig. 15>)은 2005년 25건으로 이미 비관세조치를 많이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29건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지만 그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62건으로 급증하였고 2018년 34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TBT, SPS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ADP는 2008년과 2016년, 2017년의 1건씩 3건, SG는 2006년, 2013년, 2018년 1건씩 3건만을 기록하는 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SPS의 경우에도 2008년까지 매년 시행되다가 2013년 1건, 2016년 10건 등으로 일관성 없이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하지만 2016년 10건, 2017년 56건,

2018년 26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QR도 2006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11건을 시행하는 등 최근까지도 개도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Fig. 16〉)의 경우 2016년까지는 SPS와 TBT에 비해 QR을 많이 시행해 오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QR의 경우 2005년 4건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2년을 제외하면 모두 시행하고 있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매년 시행하였고 2016년의 경우 52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QR을 많이 시행하는 이유는 소도시형 국가경제 및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 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수입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이후 QR은 한 건도 시행되지 않는 반면 SPS 4건, TBT 2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Fig. 17〉)은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많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해 온 국가로 2014년 14건으로 급락한 경우를 제외하면 2005년 43건, 2011년 45건, 2016년 34건, 2017년 29건, 2018년 45건 등으로 최근까지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SPS, TBT 건수가 각각 3건, 8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고 2018년 각각 19건, 2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DP의 경우에도 총 47건을 기록하는 등 적지 않고 특히 2016년 10건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태국은 필리핀과 같이 QR도 2014년까지는 꾸준히 시행해 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개도국의 성격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Fig. 18〉)의 경우 2008년 6건이던 비관세조치 건수가 2013년 24건, 2015년 27건 등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42건, 2018년 3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TBT는 2017년 28건, 2018년 24건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ADP는 2016년, 2017년 처음으로 각각 3건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베트남이 급격한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 산업 약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QR과 같은 개도국이 선호하는 비관세조치를 단 한 건도 시행하지 않았

는데 이는 베트남이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에 있어 WTO체제 하에서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2016년 이후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7년 크게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QR은 2017년 이후 시행되지 않는 대신 SPS와 TBT 등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각 비관세조치의 비중 및 시행과 추이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소득 수준, 개방도, 개방의 속도 등에서 격차가 크고 또한 각 개별국가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자국 산업의 보호의 목표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관세조치 시행의 차이점들은 향후 아세안이 단일의 경제공동체로 통합,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Fig. 13. Trends of NTM(Indone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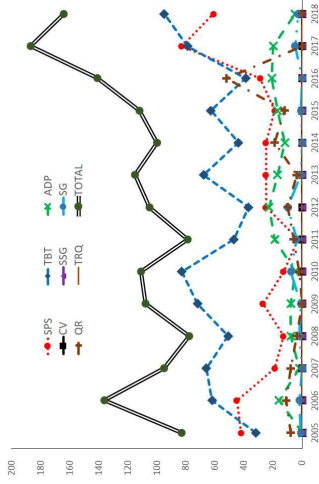


Fig. 14. Trends of NTM(Malay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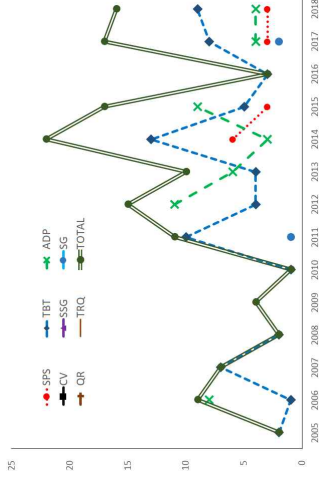


Fig. 15. Trends of NTM(Philipp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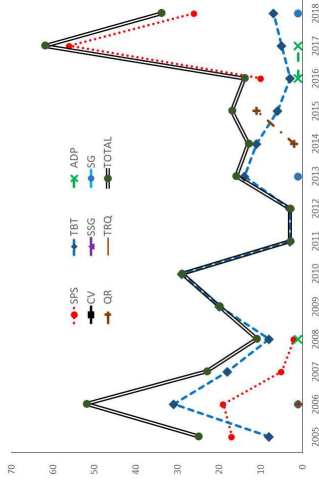


Fig. 16. Trends of NTM(Singapore)



Fig. 17. Trends of NTM(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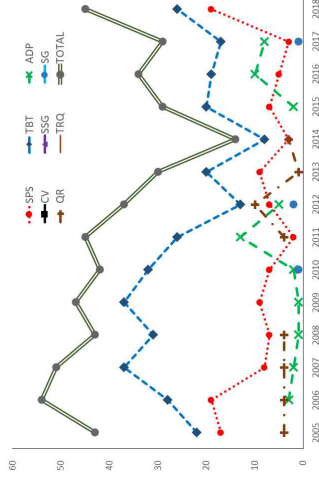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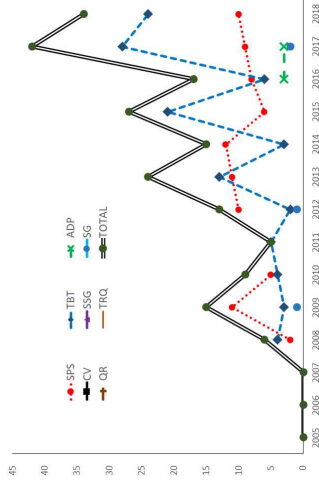


Fig. 18. Trends of NTM(Vietnam)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IV. 아세안의 특정무역현안

1. 주요국들과의 비교

위에서 우리는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및 추이를 세계 및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비관세조치 그 자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비관세조치가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 상대국이 이익을 제기한, 다시 말해 당사국 간 무역분쟁 또는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제기된 STC에 대해 합의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국 간 통상갈등 내지는 WTO 무역분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로 아세안이 시행한 비관세조치 중 STC로 분류된 비관세조치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중 그 영향을 받는 상대방 국가가 이익을 제기할 정도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1,614건 중 STC로 분류된 75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여기서의 비관세조치는 여러 개의 상품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같으면 하나로 간주). 이에 앞서 아세안의 STC 비중이 세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STC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대방 국가가 이에 대한 이익을 많이 제기했다는 것이고 무역분쟁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STC 비중을 통해 비관세조치 시행 시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정부의 통상 분야의 협상력 및 전문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Table 8)은 아세안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비관세조치 및 STC 건수 그리고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아세안의 총 비관세조치는 1,614건으로 이중 STC로 제기된 것은 75건으로 4.6%를 차지한다. 이는 EU(11.4%), 인도(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세계(1.9%) 및 미국

(2.8%), 일본(3.3%), 캐나다(1.0%), 호주(1.8%), 한국(3.4%)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4.4%), 브라질(1.7%)에 비해서도 높다. 이처럼 아세안의 STC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의 경우 STC 비중이 4.6%, CLMV는 4.9%로 CLMV 비중이 좀 더 높는데 이는 베트남의 STC가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STC의 국가별 비중에서도 아세안은 8.5%로 EU(21.5%), 중국(11.3%), 미국(9.5%)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의 STC 비중 및 국가별 비중이 주요국들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로 높다는 것은 아세안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상대국가의 문제제기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세안이 사전적으로 STC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무역분쟁이 야기되지 않기 위한 상대국과의 통상 협상력 및 전문성의 향상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베트남을 비롯한 CLMV 국가들의 시장개방의 진전과 비관세조치의 활용이 많아질 경우 STC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LMV 국가들의 비관세조치가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관련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STC 비중을 보면 비관세조치 중 제기된 STC 비중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비관세조치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STC 제기 건수도 전무하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에도 STC 비중은 각각 0.9%, 0.8%, 2.6%로 아세안 평균의 4.6%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STC 비중은 각각 15.9%, 5.2%, 5.8%로 아세안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한 통상정책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Yun-Hwa and Hee-Ryang Ra, 2017; Kim Tae-Yoon and Jae-Ho Lee, 2010). 베트남의 경우에도 급격한

Table 8. Specific Trade Concerns of ASEAN & Other Countries

	비관세조치 건수 (A)	SPS (B)	TBT (C)	STC 건수 (D=B+C)	비중(%) (D/A)	STC 비중(%)
미국	3,004	33	51	84	2.8	9.5
EU	1,670	70	120	190	11.4	21.5
일본	991	19	14	33	3.3	3.7
캐나다	1,433	3	11	14	1.0	1.6
호주	603	9	2	11	1.8	1.3
한국	1,166	7	33	40	3.4	4.5
중국	2,285	23	77	100	4.4	11.3
인도	845	13	28	41	4.9	4.7
브라질	1,981	8	26	34	1.7	3.9
브루나이	0	0	0	0	-	0.0
캄보디아	22	0	0	0	0.0	0.0
인도네시아	239	14	24	38	15.9	4.3
라오스	16	0	0	0	0.0	0.0
말레이시아	136	4	3	7	5.2	0.8
미얀마	2	0	0	0	0.0	0.0
필리핀	322	2	1	3	0.9	0.3
싱가포르	127	0	1	1	0.8	0.1
태국	543	3	11	14	2.6	1.6
베트남	207	5	7	12	5.8	1.4
아세안6	1,367	23	40	63	4.6	7.1
CLMV	247	5	7	12	4.9	1.4
아세안	1,614	28	47	75	4.6	8.5
세계	47,119	279	603	882	1.9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경제성장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정교한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STC의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세안 개별국가들 차원에서는 STC 제기 비중이 국가들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아세안 국가들의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적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 경제통합과정에서 해결해 가야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2. 아세안 개별국가들 현황

다음으로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75건의 STC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들의 문제제기와 분쟁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STC의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Table 9>는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 현황을 정리한 것이

Table 9. Complaints of Specific Trade Concerns against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비중(%)
EU	17	4	2		8	6	37	19.2
미국	14	3	1		7	7	32	16.6
호주	8	1			5	5	19	9.8
뉴질랜드	3	1			5	4	13	6.7
멕시코	4				4	5	13	6.7
브라질	9	3					12	6.2
캐나다	3	1	1		4	3	12	6.2
일본	4	2			5	1	12	6.2
칠레					3	8	11	5.7
남아프리카 공화국	2				2	1	5	2.6
한국	4						4	2.1
아르헨티나	2	1			1		4	2.1
스위스	1				3		4	2.1
대만	2				1		3	1.6
도미니카	1			1			2	1.0
과테말라				1	1		2	1.0
세네갈					1	1	2	1.0
중국			1				1	0.5
우루과이		1					1	0.5
터키		1					1	0.5
인도네시아				1			1	0.5
태국						1	1	0.5
러시아						1	1	0.5
합계	74	18	5	3	50	43	193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다. 아세안에 대한 STC 제기 국가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 모두 23개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이지만 그 비중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압도하고 있다. EU가 37건(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이 32건(16.6%), 호주 19건(9.8%), 뉴질랜드와 멕시코가 각각 13건(6.7%), 캐나다, 일본, 브라질이 각각 12건(6.2%), 칠레 11건(5.7%) 등의 순이다.

주요 선진국들인 EU,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의 STC 제기건수는 모두 125건으로 총 STC 제기건수 중 거의 2/3(64.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EU, 미국, 호주 등 상위 3개국의 합계는 88건으로 절반(45.6%)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선진국들의 STC 제기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이 비관세 조치 등 상대국의 통상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선진국들이 국제통상질서 및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 선도하는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10>은 아세안 STC 관련 비관세조치를 나타낸 것이다.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보면 총 75개의 STC 중 SPS가 28건(37.3%), TBT가 47건(62.7%)로 SPS가 1/3, TBT가 2/3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 과일 등의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되어 있는 SPS는 품목에 있어 한정적인데 비해 TBT는 모든 상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BT에 대해 제기된 STC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Table 11>에서 STC가 최초 제기된 시기를 보호무역의 기초가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1995-2008

Table 10. Non-Tariff Measures related to Specific Trade Concerns against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비중(%)
SPS	14	4	2	0	3	5	28	37.3
TBT	24	3	1	1	11	7	47	62.7
합계	38	7	3	1	14	12	75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Table 11. Periods of Specific Trade Concerns against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비중(%)
1995~2008	9	2	2	0	6	0	19	25.3
2009~2016	20	5	1	1	7	8	42	56.0
2017~2018	9	0	0	0	1	4	14	18.7
합계	38	7	3	1	14	12	75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Table 12. Products related to Specific Trade Concerns against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비중(%)
육류	7	2	1		1	2	13	22.0
과일, 채소, 원예	4	1	1		1	2	9	15.3
식품	2				3	4	9	12.9
주류	1				2	3	6	10.2
철강	3	1			2		6	8.6
일반 라벨링	2	2			2		6	8.6
할랄상품	3	1					4	5.7
휴대전화 및 PC	2					1	3	4.3
세라믹 도기 및 타일	1		1		1		3	4.3
담배				1	1		2	2.9
타이어	1				1		2	2.9
의료기, 화장품	1				1		2	2.9
완구류	1						1	1.4
자동차						1	1	1.4
LPG가스 스투브	1						1	1.4
의약품						1	1	1.4
전자보안						1	1	1.4
합계	29	7	3	1	15	15	70	100.0

Source: WTO I-TIP Goods data base,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language=en>, 저자 정리.

년 STC 제기건수는 19건(25.3%), 2009~2018 STC 건수는 56건(74.7%)로 4건 중 3건은 2009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STC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된 2017~2018년 14

건(18.7%)로 단 2년 동안의 STC 제기건수가 다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STC 집중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두 국가가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able 12>는 아세안 STC가 제기된 상품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주로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별로 보면 육류와 관련된 STC가 13건(22.0%), 과일, 채소, 원예 등 식물류와 관련된 STC가 9건(15.5%), 할랄인증과 관련된 STC가 4건(5.7%) 등으로 세 개의 합이 28건(40.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주류, 철강제품, 휴대전화 및 PC, 도기 및 타일, 담배 등의 순으로 STC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아세안은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수출 상대국들의 STC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아세안 지역차원의 선발국-후발국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별국가 차원의 통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세안 역내차원의 정책적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Table들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도네시아가 시행한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총 38건이다. STC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조치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TC를 제기한 상대국을 살펴보면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만,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 등의 순이다. 이 중 미국, EU, 호주 3개국이 52.7%의 비중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48.4%)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SPS 등 농축산물의 검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경우 이해가 걸려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SPS와

관련된 STC 제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STC는 SPS와 TBT로 구별되는데 SPS와 관련해서는 14건, TBT와 관련해서는 24건으로 TBT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초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8년까지는 9건이고 그 이후 2009~2016년은 20건, 2017~2018년은 9건으로 최근 2년 동안의 STC 제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본격화한 2017~2018년 STC가 크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보호무역조치의 강화로 인한 국가간의 비관세조치를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TC의 내용 및 관련 상품을 살펴보면 주로 식품안전을 위한 육류 및 육가공품, 신선과일, 신선채소, 원예작물 등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수입제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철강제품, 완구류, 할랄상품, 주류, 휴대전화, 유약 처리 세라믹 등의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STC 제기가 주목된다. 최근 할랄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화하는 추세를 놓고 보았을 때 상대 수출국들과 사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STC를 포함한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벨링의 경우에도 상품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것으로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메뉴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통보와 합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농축산물 및 할랄상품 및 라벨링 관련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국제적 차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STC는 총 7건으로 STC 상대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터키, 우루과이 등이고 이 중 미국, EU, 호주 3개국이 4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도 말레이시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41.5%)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고 SPS 등 농축산물의 검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경우 이해가 걸려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STC 제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중 SPS는 4건, TBT는 3건이다. 또한 최초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는 2건이고 2009년 이후는 5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STC가 대다수이다. 이렇듯 2009년 이후 STC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조치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의약품 홀로그램 부착 관련 STC와 철강 제품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STC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 모두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것으로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및 육가공품, 신선과일, 신선채소, 원예작물 등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상대방 국가들의 STC 제기가 주목된다. 돼지고기의 수입과 관련된 수출국들의 STC 제기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향후 돼지고기를 핵심으로 하는 할랄기준과 관련된 상대 수출국들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향후 농축산물 및 할랄상품 관련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국제적 차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 STC는 총 3건으로 STC 제기 상대국을 살펴보면 미국, EU, 캐나다, 중국 등이다. 3건 중 하나는 세라믹 벽 및 타일의 기술적 요건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곤충 전염병으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과일 수입제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신선육 수입제한 건으로 식품 안전 또는 검역 관련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이다. 필리핀의 경우 비관세조치 건수가 322건으로 인도네시아의 239건, 말레이시아의 136건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비해 STC 제기가 많지 않다. 이는 필리핀이 비관세조치 시행에 있어서 수출국들로부터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총 127건의 비관세조

치 건수 중 STC 제기는 담배제품의 포장법과 관련된 TBT 단 1건이다. 동 STC는 2015년 제기되었는데 상대국은 도미니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등으로 담배포장에 일반방식이 아닌 혐오사진 등을 부착하는 국가들이다. 싱가포르의 비관세조치 시행에 있어서 상대 수출국들로부터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만큼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총 14건이다. STC 상대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좀 더 다양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한국, 대만,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과테말라 등이다. 물론 이중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4개국에 50.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태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47.5%)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는 상반되게 14건의 STC 중 3건만이 SPS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TBT에 대한 것으로 태국은 TBT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BT는 라벨링, 표준 및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관련 상품도 의류기기, 철강제품, 스낵류, 주류, 타이어, 타일, 영유아 식품 등 다양하다. 이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선발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산업화 수준이 높고 주로 식품안전 및 검역 관련 이슈보다는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가 제기된 시기를 보면 최초 제기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95~2008년까지는 6건이고 2009~2018년은 7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STC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같이 2009년 이후 STC가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조치의 영향 또는 상대방 국가들의 민감도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207건의 비관세

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총 12건이다. STC 상대국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등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STC 제기가 없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베트남의 STC가 제기된 비관세조치들이 주로 농축산물의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 베트남으로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에서 관련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의 제기가 많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2건의 STC 제기 중 SPS가 5건, TBT가 7건으로 TBT가 좀 더 많다. 또한 최초 제기일은 2016년 이전 8건, 2017~2018년 4건으로 최근 2년 동안 STC 제기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경제 개혁 개방과 더불어 2017년 이후 세계적인 보호무역추세의 강화와 함께 비관세조치의 증가 및 이에 대한 STC 제기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에 제기된 STC의 내용 및 관련 상품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식품안전에 관한 주류의 첨가물 안전 기준 및 라벨링 요건, 육류 및 육가공품, 신선과일 등의 전염병 통제를 위한 수입제한 등이 그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STC 제기의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비관세조치의 부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비관세조치의 시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향후 급속한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비관세조치를 최소화하고 비관세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상대국과의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의 확보 및 이를 근거로 한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할랄상품과 관련된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시행 및 STC 제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는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에 비해 제기된 STC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통상 분야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게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STC보다 상품의 표준 및 인증 기준과 관련된 STC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 중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의 경제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위에서 우리는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STC)을 중심으로 그 현황,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및 STC의 비중이 주요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크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는 다분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의 통상정책에 있어 보호무역을 위한 비관세조치가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비관세조치가 직접적으로 비관세장벽 등의 국내 산업의 보호조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관세조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세안은 2016년까지 SPS, TBT 뿐만 아니라 QR도 상당수 시행하여 왔으나 2017년 이후에는 SPS와 TBT, 그중에서도 TBT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WTO 차원에서 그 시행이 제한을 받고 있는 QR보다는 활용 가능한 TB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분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관세조치가 주요국들 못지않게 다수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STC 제기 현황 및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시행 및 STC 제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는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에 비해 제기된 STC가 많지

는 않은데 이는 이들 선발국들의 통상 분야의 상대적인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게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STC보다 상품의 표준 및 인증과 관련된 STC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의 경제구조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된 2017~2018년에 제기된 STC가 다수 증가하는데 이는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보호무역정책의 강화로 인한 수입 상대국의 피해에 대한 민감도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경우 총 75개의 STC 중 SPS가 1/3, TBT가 2/3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 과일 등의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되어 있는 SPS는 품목에 있어 한정적인데 비해 TBT는 모든 상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BT에 대해 제기된 STC가 많다고 할 수 있다. STC가 최초 제기된 시기를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예상대로 4건 중 3건은 2009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STC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집중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두 국가가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TC가 제기된 상품을 살펴보면 주로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위별로 보면 육류와 과일, 채소, 원예 등 식물류 및 할랄인증과 관련된 STC가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주류, 철강제품, 휴대전화 및 PC, 도기 및 타일, 담배 등의 순으로 STC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아세안은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수출 상대국들의 STC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역내의 선발국-후발국 간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별국가 차원의 통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통상정책의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STC 등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주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 2위, 해외직접투자 2위라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이해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新南坊)정책 등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통상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 개별국가 간 처할 수 있는 유사한 무역마찰 또는 분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WTO의 비관세조치 및 STC 관련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주로 아세안과 주요 국가 간 수량적 차원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내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개별국가들의 국가별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아세안 개별국들의 비관세조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References

- Jung, Chan-Mo (2012),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125-130.
- Kim, Tae-Yoon, et al. (2010), *Non-Tariff Barriers in the Southeast Asia* (Policy Analysis, No. 10-20),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m, Tae-Yoon and Jae-Ho Lee (2010), *Non-Tariff Barriers in Indonesia and Ad-Valorem Equivalents on the Steel Products* (Policy Analysis, No. 10-13),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im, Yun-Hwa and Hee-Ryang Ra (2017), “WTO Dispute Settlement of Indonesia: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1(3), 29-55.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05), *NTBs in ASEAN 10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
- Kwon, Yul, et al. (2006), *Non-Tariff Barriers in the Major ASEAN Countr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won, Yul and Hee-Yeon Bae (2005), *Non-Tariff Barriers in the Major ASEAN Countries*, Seoul: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Analysis on the NTBs of Major Countrie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3), *Trade Barriers Repor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3*.
- Ra, Hee-Ryang (2016), “WTO Dispute Settlement of Southeast Asia: The Trend and Challenges”, *The Southeast Asian Review*, 26(4), 119-177.
- _____ (2014), “Trends and Issues of ASEAN Intra-Regional Trade ahead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Comparative Study with EU, NAFTA, and MERCOSUR”, *The Southeast Asian Review*, 25(1), 31-84.
- Seon, A-Leum and Hee-Ryang Ra (2015), “The Impact of TBT on Trade: Focused on Korea’s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Export to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9(1), 205-240.